

# 수속 약관



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(이하 '고객'이라 합니다)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(이하 '유학원'이라 합니다)가 뒷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 제1조(유학원의 의무)

- ①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·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- 상담(수속과정, 학교선택, 교육과정, 관련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)
  - 지원 서류 안내 및 샘플 파일 제공
  - 지원 서류 감수
  - 지원서 작성 및 제출
  -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
  - 외국어시험점수 통보(Test Score Report)
  - 입학신청료(Application Fee) 환전. 납부
  - 인터뷰 예약
  - 입학허가 여부 확인
  - 학비 및 예약금(Deposit) 송금 안내
  - 비자 세미나
  - 신체검사 안내
  -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
  - 출국 세미나
- ②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③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·설명하고,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- ⑤ 유학원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. 다만,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, 이 경우 유학원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학교에 송금하며 해당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.

## 제2조(고객의 의무)

- 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

여야 하며,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
### 제3조(유학원의 면책)

-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-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
  -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  -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- ②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유학 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4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)

- ①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객은,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5조(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)

-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.
  1. 학사학위 과정 및 학사 편입
    - 지원 서류 샘플을 발송한 경우: 50%
    - UCAS 지원서를 작성중인 경우: 100%
  2. 석사·박사학위 과정
    - 지원 서류 샘플을 발송한 이후: 50%
    - 1개교 이상의 지원서를 작성중인 경우: 100%
  3. 조기유학
    - 1개교 이상의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: 50%
    - 1개교 이상의 입학 시험을 치른 경우: 100%
  4. 예비과정
    - 지원 서류 샘플을 발송한 이후: 50%
    - 해당 교육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: 100%
  5. 클리어링
    - 1개교 이상 연락한 이후 환불 불가
  6. 비자 대행
    - 비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이후 환불 불가
  7. 어학연수 및 섬머 스쿨
    - 1개교 이상의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: 100%
-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폐기해야 합니다.

## 제6조(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)

- ①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고객이 원하면 고객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고객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.

## 제7조(계약의 변경 등)

-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
##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 사항

### 0. 공통

- 유학원과 고객은 학교 지원에 필요한 UCAS 및 온라인 지원 포털 로그인 정보를 상호 공유합니다.
- 본 계약은 최초 계약일에 희망한 입학 년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이중 혹은 다중 유학원과의 계약을 금지합니다.
- 영문번역, 영문교정은 단어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
### 1. 학사·석사·박사학위 과정

- Pre-sessional (프리세셔널) 과정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, 반드시 Academic IELTS for UKVI 성적이 필요합니다.
- Clearing (클리어링) 지원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유학원의 비 파트너 대학의 지원 시, 담당 매니저의 조언을 통해 고객은 본인 계정으로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.
- Oxford, Cambridge, Imperial, UCL, LSE, 의대, 수의대, 치대에 지원 시,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, 앞서 언급된 대학에 진학을 확정하는 경우 고객은 비자 신청을 위해서 학교로부터 직접 CA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석사학위 과정 지원 시, 3개교 지원이 기본이며, 추가 지원 시 1개교당 10만원(부가세 별도)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박사학위 과정 지원 시, 연구계획서 (Research proposal)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 후 담당 교수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.
- 동반인 비자 대행을 진행할 시, 동반인 1명당 10만원(부가세 별도)의 추가 비자대행료가 발생합니다.

### 2. 예비과정

- 예비과정은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Academic IELTS for UKVI 성적이 필요합니다.
- 예비과정 수수료 후 대학으로 진학 시, 비자대행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